

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

일부개정규칙안

1. 개정이유

최근(5.26) 국내공항의 여객기 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비상문이 불법 개방되어 여객 및 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, 당·정 협의를 거쳐 “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”을 마련하였고,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객실승무원의 이상행동 승객 감시교육, 기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근거 및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항공기내 이상행동 승객감시 교육 신설(안 제6조제9호, 제6조의2제2항)

기내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·초조 등 이상행동 승객을 식별·감시하는 행동탐지 교육을 신설하고 연 2시간 이수 의무화

나. 기내 탈출구 조작행위 금지 안내 및 경고 스티커 부착(안 제9조제5항·6항)

현행, 형사상 처벌대상임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“흡연·전자기기 사용·승무원 업무방해 행위”에 대해 안내방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 “탈출구·기기 등의 조작행위”도 안내방송에 추가하고, 탈출구 임의조작이 금지행위임을 경고하는 스티커를 탈출구 등에 부착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을 강화

다.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(안 제2조~4조, 제6조의2, 제8조, 제9조, 별지6·7서식)

오탈자 수정(제8항 → 제8호), 항공안전법에 따른 용어 통일(일반 객실 승무원 → 객실승무원), 불법행위 처리결과 등 통보양식(별지6, 7호 서식)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항공보안법 제14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규칙안

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일반 객실승무원”을 “객실승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항공보안법 제2조제8항”을 “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”로 한다.

제3조제5항 중 “항공기내보안요원”을 “항공기내보안요원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 중 “항공기내보안요원을 포함한 일반 객실승무원”을 “항공기내보안요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항공기내보안요원(일반 객실승무원 포함)”을 “항공기내보안요원 등”으로, “녹화할 수 있으며”를 “녹화하여야 하며”로,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일반 객실승무원”을 “객실승무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 제3호 “관찰 및 감시”를 “불안·초조 등 이상행동 행위자를 식별·인터뷰 및 집중 감시하는 절차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 전단 중 “사람과 일반 객실승무원”을 “사람”으로, “실습훈련을 포함한 최소 3시간”을 “실습훈련과 이상승객 감시교육 2시간을 포함한 최소 5시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항공기내보안요원 및 일반 객실승무원”을 각각 “항공기내보안요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항공기내보안요원”을 각각 “항공기내보안요원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

“불법행위 발생현황 및 세부내용 등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여”를 “별지 제6호 서식의 불법행위 발생현황·처리결과 및 국가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별제 제7호 서식의 범인 처리결과를”로 한다.

제9조제5항 후단 중 “항공기내 보안요원(기장·승무원)의”을 “항공기내 운항 승무원 및 보안요원(객실승무원)의”으로, “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”을 “승무원 업무 방해 및 탈출구·기기 등의 조작 행위 등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포함시켜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”를 “포함시키고, 추가적으로 일반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2024년 5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과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항공기내보안요원“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, “항공기내보안요원 등“이란 항공기내보안요원과 <u>일반 객실승무원</u>을 말한다.</p> <p>6. “항공기내의 불법행위”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<u>항공보안법 제2조제8항</u>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3조(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 내 거동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보안위반의 경우 <u>항공기내보안요원</u>이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는 절차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객실 승무원</u>-----.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</u> -----.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항공기내보안요원 등</u>----- -----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
제4조(항공기내보안요원의 권한 및 책임) ① (생략)

② 항공기내보안요원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포함한 일반 객실승무원은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도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항공기내보안요원(일반 객실승무원 포함)은 객실 내 불법행위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행위 등을 녹화할 수 있으며,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 객실승무원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, 항공기 내 주변 승객에게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⑤ ~ ⑧ (생략)

제6조(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)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훈련프로그램에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협수준에 따른 현실적 시나리오 및 훈

제4조(항공기내보안요원의 권한 및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항공기내보안요원
등-----

-----.

③ 항공기내보안요원 등-----

----- 녹화하여야 하며-----
----- 하여
야 한다.

④ -----

----- 객실승무원-----

-----.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) -----

런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3. 관찰 및 감시

4. ~ 8. (생략)

제6조의2(교육과정운영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초기교육은 실습훈련을 포함하여 최소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, 초기교육을 받은 사람과 일반 객실승무원은 매 12개월마다 2시간 이상의 실습훈련을 포함한 최소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」 제22조에 따른 객실승무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③·④ (생략)

제8조(불법행위 대응 및 처리절차 등) ①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및 일반 객실승무원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녹화(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불안·초조 등 이상행동 행위자를 식별·인터뷰 및 집중 감시하는 절차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교육과정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사람은

-----실습훈련과 이상승객 감시교육 2시간을 포함한 최소 5시간 -----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불법행위 대응 및 처리절차 등) ① -----
-----항공기내보안요원
등 -----

외)하여야 한다.

② 항공기내보안요원 및 일반 객실승무원은 폭행행위,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, 출입문·탈출구·기기 등의 조작행위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·위계행위, 승무원 업무방해행위, 음주 후 위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범한 승객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압 및 구금 조치(구금 이후에도 고성·폭언 등 위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추가 조치 포함)하여야 한다.

③ 항공기내보안요원 및 일반 객실승무원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, 흡연행위, 단순 소란행위,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 수 있으며, 경고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판단에 따라 제2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.

④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불법행위 승객을 인계하여야 한다.

⑤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은

-----.

②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-----

-----.

③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-----

-----.

④ ----- 항공기내보안요원 등

-----.

⑤ ----- 항공기내보안요원 등-----

기내 보안요원(기장·승무원)의
의견을 들어 작성하고, 형사상 처
벌대상임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
는 흡연·전자기기 사용·승무원
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
하여야 한다.

⑥ 항공운송사업자는 제5항에도
불구하고 「항공보안법」 제23조
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위를 하
지 말 것을 기내에 구비된 승객브
리핑카드(안전정보카드)에 포함시
켜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
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유효기간) 이 지침은 「훈령
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
규정」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
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
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
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----- 항공기내 운항승무
원 및 보안요원(객실승무원)의 --

----- 승무원
업무 방해 및 탈출구·기기 등의
조작 행위 등을 -----.

⑥ -----

----- 포함시키
고, 추가적으로 일반상황에서 비
상구 조작이 금지행위임을 안내하
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
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유효기간) -----

----- 2026년 12
월 31일-----.

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

1. 기내 불법행위 총괄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폭언 등 소란행위	음주 후 위해행위	성희롱	폭행 및 협박	흡연행위	전자기기 사용	조종실 출입기도	기타	소계
1월 (2014년)									
12월 (2022년)									
합계									

2. 경찰관서 인계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폭언 등 소란행위	음주 후 위해행위	성희롱	폭행 및 협박	흡연행위	전자기기 사용	조종실 출입기도	기타	소계
1월 (2014년)									
12월 (2022년)									
합계									

3. 경찰관서 인계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폭언 등 소란행위	음주 후 위해행위	성희롱	폭행 및 협박	흡연행위	전자기기 사용	조종실 출입기도	기타	소계
1월 (2014년)									
12월 (2022년)									
합계									

* 1, 2, 3 양식은 연도별로도 작성

4. 기내 불법행위 세부내용

항공사	년/월/일	국제/국내	노선	불법행위 세부내용	항공사 조치결과	경찰 조치결과

범인 처리결과 통보

통보양식

사건번호	사건일시	장소	피해자	피의자	범죄내용	조사결과	처리결과